

의안번호	제49호
의결 연월일	2022년 월 일 (제 회)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김국기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9월 5일

#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국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9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9월 5일

발 의 자 : 김국기 · 박경숙 · 김꽃임 · 이양섭 ·  
이의영 · 이종갑 · 임병운 의원(7인)

## 1. 제안 이유

- 도민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, 중소·벤처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근거법인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- 조례의 근거법인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개정(안 제1조, 안 제3조)
-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는 시행령의 삭제에 따른 조문 개정(안 제2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의7제2항”을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의7제3항에 따라”를 “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의7제4항”을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2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 관계 법령

## 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제52조(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(이하 “지역창업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에 기반한 신산업·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운영
2.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·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
3.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·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
4. 지역의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, 금융, 고용 및 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
5. 창의적인 아이디어, 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6.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

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